|  |  |  |
| --- | --- | --- |
| **요식서비스 식품구매 증명문건**  **요구 관리규정에 관한 통지**  국식약감식[2011]178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신강생산건설병단 식품약품감독관리국, 북경시 위생국, 복건성위생청:  요식서비스 식품구매 증명문건 요구 행위를 규범화 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실시조례》, 《요식서비스 식품 안전감독관리 방법》에 의거하고, 《요식업 식품 증명문건 요구 관리규정》(위감독발[2007]274호)의 성실시행을 기초로 하여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요식서비스 식품구매 증명문건 요구 관리규정》을 제정하였다. 이에 인쇄 발부하는 바, 준수하여 집행하기 바란다.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2011년 4월 18일  **요식서비스 식품구매 증명문건 요구**  **관리규정**  **제1조** 요식서비스 제공자의 식품(원료 포함), 식품첨가제 및 식품 관련제품 구매 증명문건요구, 입하검사와 구매기록 행위를 규범화 하고 요식서비스 식품안전 주체책임 시행과 공공대중의 음식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실시조례》, 《요식서비스 식품안전 감독관리 방법》등 법률, 법규 및 규장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요식서비스 제공자가 식품, 식품첨가제 및 식품 관련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반드시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3조**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요식서비스 제공자의 식품, 식품첨가제 및 식품 관련제품 구매 증명문건 요구, 입하검사, 구매기록 행위에 대해 감독을 진행할 책임을 갖는다.  **제4조** 요식서비스 제공자의 선진적인 증명문건 요구방식의 사용을 장려한다. 요식업종협회의 업종 자율강화 및 요식서비스 제공자의 법에 의거하여 식품, 식품첨가제 및 식품 관련제품 구매 증명문건 요구, 입하검사와 구매기록 행위의 지도를 지원하고 독려한다.  **제5조** 요식서비스 제공자는 식품, 식품첨가제 및 식품 관련제품 구매 증명문건 요구, 입하검사와 구매기록 제도를 구축하고 실행하여, 식품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요식서비스 제공자는 관련 허가증, 영업집조(营业执照), 제품 합격증명 문건, 동물제품 검역 합격증명 등의 증명자료가 없는 식품, 식품첨가제 및 식품 관련제품을 구매할 수 없다.  **제6조** 요식서비스 제공자는 교육훈련에 합격한 전임(겸임)인원을 지정하여, 식품, 식품첨가제 및 식품 관련제품 구매 증명문건 요구, 입하검사와 구매기록을 책임지도록 해야한다.  전임(겸임)인원은 요식서비스 식품안전법률 지식, 요식서비스 식품안전 기본지식 및 식품 감관감별 상식을 완전히 숙지해야 한다.  **제7조** 요식서비스 제공자가 식품, 식품첨가제 및 식품 관련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증명문건을 구비한 식품생산 경영단위 또는 도매시장에서 구매해야 하며, 공급상이 날인(또는 서명)한 구매증명을 요구하고 보존해야 한다. 구매증명은 공급상의 명칭, 제품명칭, 제품수량, 화물배송 또는 구매일자 등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장기적이고 정기적인 구매의 경우, 요식서비스 제공자가 공급상과 식품안전 보장내용을 포함한 구매공급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8조** 생산가공단위 또는 생산기지로부터 직접 구매를 할 경우, 공급상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허가증, 영업집조 및 제품합격 증명문건의 사본을 요구하고 보존해야 한다. 공급상의 법인인감(또는 서명)이 날인된 모든 구매증명 또는 모든 화물배송장을 보존한다.  **제9조** 유통경영단위(쇼핑몰, 슈퍼마켓, 도소매 시장 등)으로부터 대량 또는 장기적인 구매를 할 경우, 법인인감이 날인된 영업집조와 식품유통허가증 등의 사본을 조사 및 검사하고 보존해야 한다. 공급상의 법인인감(또는 서명)이 날인된 모든 구매증명 또는 화물배송장을 보존한다.  **제10조** 유통경영단위(쇼핑몰, 슈퍼마켓, 도소매 시장 등)으로부터 소량 또는 임시적으로 구매할 경우, 영업집조와 식품유통허가증의 보유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공급상의 법인인감(또는 서명)이 날인된 모든 구매증명 또는 화물배송장을 보존한다.  **제11조** 농산물 거래시장으로부터 구매할 경우, 시장관리부문 또는 판매자 발급한 법인인감(또는 서명)이 날인된 구매증명을 요구하고 보존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로부터 구매한 경우, 공급자가 날인(또는 서명)한 허가증, 영업집조 또는 사본, 구매증명과 모든 공급명세표를 조사 및 검사하고 보존해야 한다.  **제12조** 식품유통경영단위(쇼핑몰, 슈퍼마켓, 도소매 시장 등)와 농산물 거래시장으로부터 가축가금 육류를 구매하는 경우, 동물제품 검역 합격증명 원본을 검사해야 한다. 도축기업으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경우, 공급상이 날인(또는 서명)한 허가증, 영업집조 사본과 동물제품 검역합격증명 원본을 요구하고 보존해야 한다.  **제13조** 일률적인 배송 경영방식을 실행하는 경우, 요식서비스 기업 본사가 일괄적으로 검사, 공급상이 날인(또는 서명)한 허가증, 영업집조, 제품합격 증명문건을 요구, 보존하고 구매기록을 건립해야 한다. 각 점포는 일상구매 기록을 건립하고 보존해야 한다. 점포가 자발적으로 구매한 제품은 엄격한 증명문건 요구, 입하검사 및 구매기록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제14조** 유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검사하고 공급상이 날인(또는 서명)한 허가증, 영업집조, 제품합격 증명문건 사본을 요구하고 보존해야 한다.  **제15조** 식품, 식품첨가제를 대량으로 구매하여 수입하는 경우, 항구 수입식품 법정검험기구가 발급한 구매한 식품, 식품첨가제에 상응하는 차수의 식품검험 합격증명 사본을 요구해야 하다.  **제16조** 집중소독기업이 공급한 찬기(餐饮具)를 구매하는 경우, 검사하고 집중소독기업이 날인(또는 서명)한 영업집조 사본, 날인한 차수의 출하 검험보고(또는 사본)을 요구하고 보존해야 한다.  **제17조** 식품, 식품첨가제 및 식품 관련제품을 구매하여 입고하기 전, 요식서비스 제공자는 구매한 제품의 외포장, 포장라벨이 규정에 부합하는 지의 여부를 조사해야 하며, 구매증명에 부합하는 지를 조사하여 구매기록을 건립해야 한다. 요식서비스 제공자의 전자기록 건립을 장려한다.  구매기록은 반드시 현황에 따라 제품의 명칭, 규격, 수량, 생산 로트번호(lot number), 유통기한, 공급단위 명칭 및 연락방식, 입하일자 등이 기록되어야 한다.  고정 공급기지 또는 고정 공급상으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모든 공급 명세서를 보존하고 전항의 정보가 완전한 경우, 등기기록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된다.  **제18조** 요식서비스 제공자는 제품유형 또는 공급상, 입하시간 순차정리, 요구한 관련증명의 적절한 보관, 제품합격 증명문건과 입하기록에 따라 수정 또는 위조할 수 없으며, 그 보존기한은 2년 이하일 수 없다.  **제19조** 각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요식서비스 제공자의 증명문건 요구, 입하검사 및 구매기록 시행정황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식품, 식품첨가제와 식품 관련제품의 구매 증명문건, 입하검사와 구매기록 제도를 위반하는 경우, 식품약품감독관리 부문이 <<식품안전법>> 제87조 제2항, 제5항에 근거하여 조사를 진행한다.  **제20조** 본 규정은 국가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21조** 성, 자치구와 직할시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현지의 현황을 고려하여 실시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22조** 본 규정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关于印发餐饮服务食品采购**  **索证索票管理规定的通知**  国食药监食[2011]178号  各省、自治区、直辖市及新疆生产建设兵团食品药品监督管理局，北京市卫生局、福建省卫生厅：  　　为规范餐饮服务食品采购索证索票行为，依据《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实施条例》、《餐饮服务食品安全监督管理办法》，在认真总结《餐饮业食品索证管理规定》（卫监督发〔2007〕274号）实施情况的基础上，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局制定了《餐饮服务食品采购索证索票管理规定》。现予印发，请遵照执行。  　　　　　　　　　　　　　　　　　　　　　　　　　　　　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局　　　　　　　　　　　　　　　　　　　　　　　　　　　　 二○一一年四月十八日  **餐饮服务食品采购索证索票**  **管理规定**  **第一条**　为规范餐饮服务提供者食品（含原料）、食品添加剂及食品相关产品采购索证索票、进货查验和采购记录行为，落实餐饮服务食品安全主体责任，保障公众饮食安全，根据《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实施条例》、《餐饮服务食品安全监督管理办法》等法律、法规及规章，制定本规定。  **第二条**　餐饮服务提供者采购食品、食品添加剂及食品相关产品，应当遵守本规定。  **第三条**　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负责对餐饮服务提供者食品、食品添加剂及食品相关产品采购索证索票、进货查验、采购记录行为进行监督。  **第四条**　鼓励餐饮服务提供者采用先进的索证索票方式。支持和鼓励餐饮行业协会加强行业自律，引导餐饮服务  提供者依法规范食品、食品添加剂及食品相关产品采购索证索票、进货查验和采购记录行为。  **第五条**　餐饮服务提供者应当建立并落实食品、食品添加剂及食品相关产品采购索证索票、进货查验和采购记录制度，保障食品安全。  　　餐饮服务提供者不得采购没有相关许可证、营业执照、产品合格证明文件、动物产品检疫合格证明等证明材料的食品、食品添加剂及食品相关产品。  **第六条**　餐饮服务提供者应当指定经培训合格的专（兼）职人员负责食品、食品添加剂及食品相关产品采购索证索票、进货查验和采购记录。  　　专（兼）职人员应当掌握餐饮服务食品安全法律知识、餐饮服务食品安全基本知识以及食品感官鉴别常识。  **第七条**　餐饮服务提供者采购食品、食品添加剂及食品相关产品，应当到证照齐全的食品生产经营单位或批发市场采购，并应当索取、留存有供货方盖章（或签字）的购物凭证。购物凭证应当包括供货方名称、产品名称、产品数量、送货或购买日期等内容。  　　长期定点采购的，餐饮服务提供者应当与供应商签订包括保证食品安全内容的采购供应合同。  **第八条**　从生产加工单位或生产基地直接采购时，应当查验、索取并留存加盖有供货方公章的许可证、营业执照和产品合格证明文件复印件；留存盖有供货方公章（或签字）的每笔购物凭证或每笔送货单。  **第九条**　从流通经营单位（商场、超市、批发零售市场等）批量或长期采购时，应当查验并留存加盖有公章的营业执照和食品流通许可证等复印件；留存盖有供货方公章（或签字）的每笔购物凭证或每笔送货单。  **第十条**　从流通经营单位（商场、超市、批发零售市场等）少量或临时采购时，应当确认其是否有营业执照和食品流通许可证，留存盖有供货方公章（或签字）的每笔购物凭证或每笔送货单。  **第十一条**　从农贸市场采购的，应当索取并留存市场管理部门或经营户出具的加盖公章（或签字）的购物凭证；从个体工商户采购的，应当查验并留存供应者盖章（或签字）的许可证、营业执照或复印件、购物凭证和每笔供应清单。  **第十二条**　从食品流通经营单位（商场、超市、批发零售市场等）和农贸市场采购畜禽肉类的，应当查验动物产品检疫合格证明原件；从屠宰企业直接采购的，应当索取并留存供货方盖章（或签字）的许可证、营业执照复印件和动物产品检疫合格证明原件。  **第十三条**　实行统一配送经营方式的，可以由餐饮服务企业总部统一查验、索取并留存供货方盖章（或签字）的许可证、营业执照、产品合格证明文件，建立采购记录；各门店应当建立并留存日常采购记录；门店自行采购的产品，应当严格落实索证索票、进货查验和采购记录制度。  **第十四条**　采购乳制品的，应当查验、索取并留存供货方盖章（或签字）的许可证、营业执照、产品合格证明文件复印件。  **第十五条**　批量采购进口食品、食品添加剂的，应当索取口岸进口食品法定检验机构出具的与所购食品、食品添加剂相同批次的食品检验合格证明的复印件。  **第十六条**　采购集中消毒企业供应的餐饮具的，应当查验、索取并留存集中消毒企业盖章（或签字）的营业执照复印件、盖章的批次出厂检验报告（或复印件）。  **第十七条**　食品、食品添加剂及食品相关产品采购入库前，餐饮服务提供者应当查验所购产品外包装、包装标识是否符合规定，与购物凭证是否相符，并建立采购记录。鼓励餐饮服务提供者建立电子记录。  　　采购记录应当如实记录产品的名称、规格、数量、生产批号、保质期、供应单位名称及联系方式、进货日期等。  　　从固定供应基地或供应商采购的，应当留存每笔供应清单，前款信息齐全的，可不再重新登记记录。  **第十八条**　餐饮服务提供者应当按产品类别或供应商、进货时间顺序整理、妥善保管索取的相关证照、产品合格证明文件和进货记录，不得涂改、伪造，其保存期限不得少于2年。  **第十九条**　各级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应当加强对餐饮服务提供者索证索票、进货查验和采购记录落实情况的监督检查。  违反食品、食品添加剂和食品相关产品采购索证索票、进货查验和采购记录制度的，由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根据《食品安全法》第八十七条第（二）、（五）款进行查处。  **第二十条**　本规定由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局负责解释。  **第二十一条**　省、自治区和直辖市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可结合本地情况制定实施细则。  **第二十二条**　本规定自2011年8月1日起施行。 |